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가단5270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400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가단5270159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부종합

담당변호사 오성규

피 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을석

3. D조합

변론종결 2023. 4. 28.

판결선고 2023. 6. 2.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1) 춘천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50941호로 마친

1번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2) 춘천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50942호로 마친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3) 춘천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50943호로 마친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나.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601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D조합은1) 춘천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60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2)

춘천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6015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B이 같은 날 행한

주문 제1.의 가.항 1) 기재 1번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및 같은 항 2), 3) 기재 각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경정 및 변경등기’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경정 및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경료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역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각 경정 및 변경등기의,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조합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현

별 지.

부 동 산 목 록

강원도 춘천시 임야 17157㎡.

